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26. 3. 4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　　시　:　2026년 3월 4일 14:00 ~ 14:44

2. 회의방식　:　대면회의

3. 출석위원

이	억 원	위원장
권	대 영	부위원장
안	창 국	위 원
김	범 기	위 원
이	찬 진	위 원
김	성 식	위 원
허	범	위 원

4. 회의경과

(14시 00분 개회)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1)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

□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6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
2) 의결안건 심의

□ 의결안건 제108호 **『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』**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내용을 설명함

※ 주신보 출연료를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액 주담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*대로 의결함**

*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(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)

□ 의결안건 제109호『**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**』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□ 의결안건 제110호『**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**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해 「금융투자업규정」을 개정하는 내용

○ (위원) 최근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이 생기면서 안전자산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,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등급의 변동이 심할 수 있음. 지금은 완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극심한 시장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안전자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계속 팔로우 업(follow up)을 해주시면 좋겠음. 그리고 끝에 DLB·ELB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딩 의무를 면제한 것 같은, DLB·ELB 펀드를 보니까 발행사가 증권사인데 증권사가 발행사로써 갖게 될 익스포저(Exposure)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원금 보장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팔로우 업(follow up)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음.

○ (보고자)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감안해서 BDC 운영과정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○ (위원) 현재 세제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, 어제오늘 정도의 충격에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, 그래서 출범(launching)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범한 다음에 보완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음. 현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음.

○ (보고자)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. 시기가 미정인 경우도 있고 하반기인 경우도 있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다만,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과정에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.

○ (위원) □□은 지금 300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, 다들 업계에서도 300억 원을 한다고 하고, 이것이 공모인데 자기네 고유자산 가지고 처음에는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고 매우 적극적인 자세는 거의 안 보임.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벤처나 스타트업 쪽의 인력들을 여기에 배치해서 그쪽 생태계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사람도 아직 채용을 안 했고, □□이 조금 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독촉하고 있는데, 그것과 관련된 하소연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음.

○ (위원) 금감원과 금융위가 같이 해서 업계들 의견도 들어보고 더 보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람.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11호 **『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』**, 제112호 **『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』**, 제113호 **『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』**, 제114호 **『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』**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, 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, 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, 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승인하는 내용

○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15호 **『제니스투자자문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』**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임원 선임·해임 관련 사항 및 주요 경영사항(상호변경, 본점 이전 등)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제니스투자자문㈜에 대해 과태료 5억 4,720만원을 부과하고 甲에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문책경고 상당)을 조치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□ 의결안건 제116호『**공인회계사 □□□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**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□ 의결안건 제117호『**공인회계사 △△△ 등 2인에 대한 징계의결안**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내용

○ (위원) 자기전환사채의 공정가격 산정 같은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,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. 만에 하나 공정가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여쭤보겠음.

○ (보고자)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쟁(argue)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음. 어떤 모델을 쓰느냐, 어떻게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평가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.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원안대로 의결함

□ 의결안건 제118호 **『롯데손해보험㈜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』**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※ 롯데손해보험㈜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

○ (위원) 자본확충시기가 정해졌는데, 만약 이것이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?

○ (보고자) 경영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시기가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음.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6개월 기간 중에 자본확충 등을 통해서 자본적정성을 재고하기 위한 충실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, 그에 대해서 심사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분기별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됨.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□ 의결안건 제119호 **『토스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』**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에서 내용을 설명함

※ 토스증권㈜의 임원 선임 및 겸직현황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□ 의결안건 제120호 **『리딩투자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』**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에서 내용을 설명함

※ 리딩투자증권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위반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

○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**원안대로 의결함**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26년도 금융위원회 제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.

(14시 44분 폐회)